

#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9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. .  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- 2014. 5. 28. 신설 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띄어쓰기 반영
- 나.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(안 제9조)

##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## 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7. 입법예고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11월 13일 ~ 11월 23일 (10일간)
- 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## 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## 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 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자원순환과

##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자원순환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자원순환과장 윤 영 군
	팀장 직위·성명	자원시설팀장 임 국 남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서 효 숙 031-790-6255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</u>	<u>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9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 만,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
<u>제9조</u> (생략)	<u>제10조</u> (현행 제9조와 같음)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■ 지방재정법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